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1-015-173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1. 9. 8.

# 주 문

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: 4,8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.
  - 가.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)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등록, 변경,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2)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항목누락 없이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- 나.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다. 가.부터 나.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이 유

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'보호법'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이고, 「 」에 의거

산하의 이다.

< 피심인 일반현황 >

대표	설립 일자	자산('20년)	상시직원 수		

# Ⅱ. 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('21.4.21. ~ 4.23.)

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# 1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- 1) 피심인은 '시스템'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·변경·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·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2) 피심인은 '시스템'에서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내부관리계획에서 수립\*하였으나,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 \* 숫자와 영문자,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
- 3)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가능한 '시스템'에 대하여 아이디·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접속수단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4) 피심인은 '홈페이지'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기록을 누락하여 보관·관리한 사실이 있고, '시스템'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·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 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.7.19.~2021.8.13. '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고, 피심인은 2021.8.12.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- 가.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- 나.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각호는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(제1호),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,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(제3호),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제4호),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·갱신(제5호),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물리적 조치(제6호)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다.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이하 '고시'라 함)에 정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 다.
  - 1)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(제5조제3항)
  - 2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

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(제5조제5항)

- 3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(제6조제2항)
- 4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명 이상의 정보주 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 여야 한다.(제8조제1항)

#### 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(법 제29조)

- 1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,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.
- 2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 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, 고시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.

- 3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)이나 전용 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나,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- 4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하나,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,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 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「개 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2021. 1. 27. 개인정보보호위 원회 의결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와 과태료의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.

#### <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(단위 : 만원)

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위반행위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 조의4제1항 또는 <b>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</b> <b>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</b>	+! \J /\\\\	600	1,200	2,400

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(과태료의 가중)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위반의 정도 등)에 따라 기준금액 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 금액의 10%인 60만원을 가중한다.

2) (과태료의 감정)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 의 감경기준(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정보주체에게 피해자 발생하지 않은 등 정보주체에게 피해자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, 사전통지 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점,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

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%인 180만원을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.감경을 거쳐 총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☞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## 2. 시정조치 명령

- 가.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1)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등록, 변경,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- 2)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항목누락 없이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- 나.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다. 가.부터 나.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,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 조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제64조(시정조치 등)제1항에 따라 과태료, 시정 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 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 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 다.

# 2021년 9월 8일

- 위원장 윤종인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영 진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